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 (2019. 6.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과 개혁주의 신앙이념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재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 9. 28 개정)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구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대신대학교
2. 대신대학교 부속유치원

제 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8.20 개정)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절 자 산

제6조(정관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2008.2.18 개정)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2008.2.18 신설)

②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2008.2.18 신설)

제 3 절 삭 제 (2008.2.18 개정)

제13조 내지 17조 삭제 (2008. 2. 18 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5인(2017. 2. 7 개정)
2. 감 사 2인(2008. 2. 18 개정)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2008. 2. 18 개정)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의2(임원의 자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소속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2008. 2. 18 개정)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2008. 2. 18 개정)

- ② 삭제 (2008. 2. 18 개정)
-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008년 8월 12일 재준치)

제24조의 2(개방이사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 경영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 소속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2008. 2. 18 신설)

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1/4로 한다.(2015. 8. 27 개정)

제24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2008 .2. 18 신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008. 2. 18 신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2008. 2. 18 신설)

제24조의 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2008. 2. 18 신설)

②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8. 2. 18 신설)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08. 2. 18 신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8. 2. 18 신설)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 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2008. 2. 18 개정)

②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2008. 2. 18 개정)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2008. 2. 18 개정)

⑤ 추천감사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2008년 8월 12일 개정)

⑥ 삭제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은 학생 입학정원 500명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2008. 2. 18 개정)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08. 2. 18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2008. 8. 12 개정)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하 내용 삭제 2008년 8월 12일 개정)

제33조(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이사회회의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 2. 18 신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2008. 2. 18 신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8. 2. 18 개정)

제3 절 대학평의위원회(2008. 2. 18 신설)

제35조의 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 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인 2. 직원 : 2인 3. 학생 : 1인
4. 동문 : 2인 5.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인

제35조의 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5조의 5(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 7(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 8(운영규정) 평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사업 (2010.3.25 개정)
2. 기 타

제37조(관리인) ① 제36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 (2008년 8월12일 개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경북노회와 동대구노회, 대구노회, 대구중노회, 남대구노회, 대구수성노회, 경청노회, 구미노회, 경서노회, 경중노회, 경동노회, 경안노회, 안동노회, 서대구노회, 대경노회, 김천노회)에 귀속 된다.

(2010년 3월 25일 개정)

제40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2008년 8월 12일 개정)

제 6 장 교 직 원

제 1절 교 원

제 1관 임 명

제41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원이 아닌 자도 임면할 수 있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008. 2. 18 신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이하 이 정관에서 말하는 교원은 강사를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한다.)(2019. 6. 20 개정)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012. 8. 20개정)

2. 보수: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교직원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봉사영역 등에 관한 사항(2008. 2. 18 개정)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6. 기타: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항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 종료시 재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삭제(2008. 2. 18 개정)

⑦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⑧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보한다.

⑨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대신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원은 유치원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08. 2. 18 신설)

⑪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008. 2. 18 신설)

⑫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국립 및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소속의 세례교인임을 원칙으로 한다.

(2008 .2. 18 신설)

⑬ 대학 교육기관의 강사는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용조건을 정하여 계약으로 임용한다.(2019. 6. 20 개정)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그 밖에 강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⑭ 위 제1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는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2019. 6. 20 개정)

제41조의 2(기간제 교원)(2008. 2.18 개정)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2008. 2.18 개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2008. 2.18 개정)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1조의 3(정년) ① 제41조 제1항 이외의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1조의 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에 한한다)를 가진 남녀 교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2017년 2월 7일 개정)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2008. 2. 18 개정)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2008. 2. 18 개정)
11. 교원이 공익목적의 공공기관에 임용될 때(2011. 9. 14 신설)

제43조(휴직의 기간) ①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2조제2호 및 제4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 2. 18 개정)
 5. 제4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2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2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2008. 2. 18 개정) 이내로 한다.
 8. 제42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8. 2. 18 개정)
 9. 제42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8. 2. 18 개정)
 10.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임용기간으로 한다.(2011.9. 14 신설)
- ②휴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2008. 2. 18 개정)

제4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2011. 9. 14 개정)

- ② 제42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1. 9. 14 개정)

제4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48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퇴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의 2(명예퇴직수당) 교직원명예퇴직제를 두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 6. 20 개정)

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008. 2. 18 개정)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2008. 2. 18 개정)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2008. 2. 18 개정)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2008. 2. 18 개정)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2008. 2. 18 개정)

제51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6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019. 6. 20 개정)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2019. 6. 20 개정)

1. 제 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7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9. 6. 20 개정)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9. 6. 20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징계의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 삭제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의 2(위인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징계 의결시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4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5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6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 ~ 제80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1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2008. 2. 18 신설)

제82조(임용) ① 일반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후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2조의 2(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60세로 한다.(2017. 2. 7 개정)

제8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2008. 2. 18 개정)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08 .2. 18 개정)

제 7 장 직 제

제 1절 법 인

제87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주사 또는 부주사로 보한다.

③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절 대 학 교

제88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2008. 2. 18 개정)으로 겸보한다.

④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서리를 임명한다. 다만, 총장서리를 임명할 때까지는 이사장 승인 하에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장이 공석이거나

사고시에는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 순으로 총장직무 대행할 수 있다.(2008. 2. 18 개정)
 제88조의 2(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 및 신학대학원장은 교원(2008. 2. 18 개정)으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9조 (삭제)

제9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총무처를 둔다.(2017. 2. 7 개정)
 ② 각 처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총무처의 처장은 행정의 독립성을 위하여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2017. 2. 7 개정)
 ③ 교무처장은 교양교직과 업무를 겸하고, 학생처장은 교목 업무를 겸한다(2014. 8.26. 개정)
 ④ 각 부서에는 부장,과장,주임,담당으로 직책을 보한다..(2017. 2. 7 개정)
 ⑤ 각 과 업무를 원활히 협조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실을 두고 서비스실장은 처장 또는 부장이 겸보한다.(2008. 2. 1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의1(산학협력단) ① 대신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2019. 6. 20 개정)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2019. 6. 20 개정)

제91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 인으로 할 수 있다.(2008. 2. 18 개정)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도서관)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5급(사서)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절 유 치 원

제93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을 두되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 한다.(2008. 2. 18 개정)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는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절 정 원

제94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95조(광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매일 신문 및 기독교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최 정 원
이 사	박 재 관
이 사	김 치 영
이 사	이 종 칠
감 사	정 규 만
감 사	박 원 준
감 사	김 추 호

부 칙(1952. 3.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5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 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 9.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6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7.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6.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2.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9.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1.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 6.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5.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1984. 5.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2.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5.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4.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1.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1. 2.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의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1994. 12.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구신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대신대학교 소속교원 및 일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대구신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신대학교의 해당보직에 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구신학교 학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신대학교 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기간으로 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대구신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

(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대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5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관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대구신학교의 교육용재산 및 권리 의무는 대신대학교가 이를 승계한다.

부 칙(1997. 12.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시행당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은 제41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수는 정년,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는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8.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제41조(임면)제3항, 제13항, 제14항과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법인사무조직 정원(2008. 2. 18 개정)

정 원		
급수	직위	인원
총 계		10명
일반직	계	7명
2급	참여	0
3급	부참여	0
4급	참사	1명
5급	부참사	1명
6급	주사	1명
7급	부주사	1명
8급	서기	1명
9급	부서기	2명
기능직	계	3명
6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1명

(별표 2)

학 교 사 무 조 직 정 원(2008. 2. 18 개정)

정원		
급수	직위	인원
총계		29명
일반직	계	19명
2급	참여	0
3급	부참여	1명
4급	참사	2명
5급	부참사	2명
6급	주사	4명
7급	부주사	4명
8급	서기	3명
9급	부서기	3명

기술직	계	5명
5급	사서부참사	1명
6급	사 서	1명
7급	부 사 서	1명
8급	사서 서기	1명
9급	사서부서기	1명

기능직	계	5명
6등급		1명
7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1명
10등급		1명